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8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카니예 유한회사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◦「은행법」상 '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위반'으로 과태료 6,000,000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기 관

1.「은행법」상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위반

◦「인터넷전문은행법」 제5조제2항 및 「은행법」 제15조제2항 등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동일인에 관한 사항,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,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

- 카니예 유한회사는 20xx.xx.xx. ㈜xxxx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(x.xx%)한 사실을 「은행법」에서 정한 기한 내(5영업일)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「인터넷전문은행법」 제5조 제2항
○ 「은행법」 제15조 제2항, 제69조 제1항 제3호
○ 舊 「은행법시행령」 제4조의2, 제31조